의안번호	제 749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11월 21일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영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9

발의연월일 : 2017년 11월 21일
발 의 자 : 정영수, 이종욱, 김학철, 이숙애, 임헌경, 윤홍창, 박봉순

1. 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협의회 회의와 정족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와 안 제7조)

라. 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협의완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사학학운위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65호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3. 학교운영위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5.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자체규정에 따라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에서 선출된 임원중에서 협의회 자체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임원의 잔여 임기동안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5조(의무)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정족수)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지원) 충청북도교육감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5.15., 2011.11.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1.11.11.>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1.11.>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28., 2011.11.11.>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제2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